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운영기준(제13조의6제1항 관련)

1. 설치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2. 시설·운영기준

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다른 시설(공간)과 독립·구별되도록 설치·운영해야 한다.

나. 병상: 입원 병동 또는 낮병동(주간에만 입원하여 재활치료 등을 받는 병동)에 20병상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 외래 진료실: 재활의학과를 1실 이상 두어 운영해야 한다.

라. 재활 치료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일상생활 동작훈련, 인지치료 및 연하(삼키기)훈련 등을 위해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및 언어치료실을 각각 1실 이상 두어 운영해야 한다.

마. 그 밖에 사회사업실, 교육실 및 상담실을 각각 1실 이상 두어야 한다.

3. 인력기준

가. 의사: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나. 간호사: 낮병동(주간에만 입원하여 재활치료 등을 받는 병동) 및 외래진료실에 간호사를 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 의료보건의직: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각각 5명 이상 두고, 언어재활사 및 사회복지사(1급)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라. 사무직: 원무, 심사, 코디네이터 등 행정인력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마. 어린이 재활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팀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4. 장비기준

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언어치료실에는 대동작기능평가도구(GMF

M), 발달평가 도구, 일상생활동작 연습기구, 연령별·영역별 언어 평가도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 장비를 두어야 한다.

5. 「의료법」 등 의료기관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여건이나 의료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그 설치·운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